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공식 통계자료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 (2014-2020)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 통계자료 개요

고 유 번 호 KERC-2020-STAT·01-H-09

작 성 기 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공제사업팀

조 사 대 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사 항 목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

조 사 기 간 2014. ~ 2020.

## 용어해설 및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주요 용어해설

-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별표 3]에 명시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분류 기준 (작성일 기준, 2019. 12)

제품군	세부품목	
대형기기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라. 에어컨디셔너 마. 자동판매기(온도교환 기능이 있는 것)

제품군	세부품목	
통신·사무기기	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나. 프린터 다. 복사기	라. 팩시밀리 마.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	세부품목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제품군	세부품목	
소형기기	가. 전기비데 나. 공기청정기 다. 전기히터 라. 오디오(휴대용 제외) 마. 전기밥솥 바. 연수기	사. 가습기 아. 전기다리미 자. 선풍기(환풍기 제외) 차. 믹서(주서 포함) 카. 청소기 타. 비디오플레이어

- ‘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전기·전자제품’  
→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분류 기준 (작성일 기준, 2020. 1)

제품군	세부품목	
온도교환기기	가. 냉장고 나.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다. 자동판매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제습기

제품군	세부품목	
디스플레이기기	가. 텔레비전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노트북, 랩톱) 다. 내비게이션	

제품군	세부품목	
통신·사무기기	가. 개인용 컴퓨터(본체, 자판,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나. 복사기 다. 프린터 라. 팩시밀리	마. 스캐너 바. 빔프로젝터 사. 유·무선 공유기 아.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제품군	세부품목	
일반 전기·전자제품	가. 세탁기	머. 전기주전자
	나. 전기오븐	버. 전기온수기
	다. 전자레인지	서. 전기프라이팬
	라. 음식물처리기	어. 헤어드라이어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저. 러닝머신
	바. 전기비데	처. 감시카메라
	사. 공기청정기	커. 식품건조기
	아. 전기히터	터. 전기안마기
	자. 오디오(휴대용 제외)	퍼. 족욕기
	차. 전기밥솥	허. 재봉틀
	카. 연수(단물)기	고. 영상게임기
	타. 가습기	노. 제빵기
	파. 전기다리미	도. 튀김기
	하. 선풍기(환풍기 제외)	로. 커피메이커
	거. 믹서(주서 포함)	모. 약탕기
	너. 청소기	보. 탈수기
	더. 비디오플레이어(VCR, DVD 한정)	소.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의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러. 토스트기	

- 재활용부과금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하는 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
- 회수 부과금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하는 부과금을 ‘회수부과금’이라 한다.
- 재활용 단위비용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 기준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을 ‘재활용 단위비용’이라 한다.
- 회수 단위비용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산출 기준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을 ‘회수 단위비용’이라 한다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제 18조 및 제18조의2 에서 정하는 회수·재활용 부과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회수·재활용 단위비용(동법 시행령 [별표5])을 연도 별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 동법 하위법령 개정(2019.12.31.)에 따른 폐전기·전자제품 분류 기준변경으로 2020년 부터 적용되는 회수·재활용 단위비용은 변경된 제품군(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된 별도의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단, 태양광 패널은 제외함



##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

### 1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 (2014-2019)

- 5개 제품군 기준 (대형, 통신사무, 중형, 소형, 이동전화단말기)
- 단위비용 적용시기 (2014 ~ 2019)

단위 : 원(W)/ kg

구분	단위비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형기기	재활용	219	246	274	274	274	274
	회수	81	91	102	102	102	102
통신사무	재활용	346	389	433	433	433	433
	회수	86	97	108	108	108	108
이동전화단말기	재활용	2,173	2,445	2,717	2,717	2,717	2,717
	회수	1,729	1,945	2,162	2,162	2,162	2,162
중형기기	재활용	339	381	424	424	424	424
	회수	85	96	107	107	107	107
소형기기	재활용	464	522	580	580	580	580
	회수	88	99	111	111	111	111



## ㉒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 (2020~)

- 4개 제품군 기준 (온도교환, 디스플레이, 통신사무, 일반전자제품)

※ 태양광패널 제외

- 단위비용 적용시기 (2020 ~)

단위 : 원(W)/ kg

구분	단위비용	2020				
온도교환기기	재활용	470				
	회수	155				
디스플레이기기	재활용	611				
	회수	174				
통신사무기기	재활용	811				
	회수	166				
이동전화단말기	재활용	4,123				
	회수	3,413				
일반전기·전자기기	재활용	740				
	회수	141				



본 통계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있습니다.  
본 자료의 인용 또는 활용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함을 안내 드립니다.

자료문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연구개발팀 (031 8014 5441)